#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홍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596

발의연월일: 2024. 8. 6.

발 의 자: 박홍배・이기헌・이상식

문대림 • 민병덕 • 김현정

김남근 • 강득구 • 강훈식

한준호 • 박정현 • 김영진

이광희 • 이수진 • 박해철

의원(15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('22.12)에서 협약 당사국은 2030 년까지 훼손된 생태계의 30% 이상을 복원하고, 기업활동의 생물다양 성 영향 및 의존도 등을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하는 등 국제 사회를 중심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과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기 업 경영 등에 대한 압력이 증대하고 있음.

현재 자연환경복원사업은 국가와 지자체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,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 임. 이에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,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생물다양성 기여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실적을 인정하고 관리하는 체계 를 마련하고자 함.

한편,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인증해

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모범적인 복원사례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함.

또한, 2007년 11월부터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'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'로 하여금 대체서식지 조성, 생태통로 설치, 훼손된 자연환경의복원사업 등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으나, 대행자 등록 등 법적 절차가 없어 그 자격요건의 유지 여부 및 실적관리 등이 어려운 실정임.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행자 등록 및 등록취소 요건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45조의7부터 제45조의11까지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의2에 제45조의7부터 제45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5조의7(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등) ①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 등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인, 단체, 개인 등(이하 "민간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.

- 1. 자연환경복원사업에 필요한 재산, 토지 등을 기부하는 방식
- 2.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직접 실시하고 그 지역을 기부하는 방식
- 3. 민간이 보유한 재산의 무상 대여 등 기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
- ② 환경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·군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참여 방식의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민·관 협의체 구성, 사업 컨설팅, 참여 실적 인정 등 필요한 행정적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여 활동 등으로 활용될 수 있

도록 그 실적을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- ④ 환경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·군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의 재산, 토지 등을 기부 받은 경우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·관리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기부 및 사용·관리 절차 및 방법, 자연환경복원 실적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45조의8(자연환경복원사업 등의 대행) ① 환경부장관 또는 자연환경 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 등의 효과적 시행 및 생태· 환경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한 자(이하 "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"라한다)에게 설계 및 시 공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  - ② 자연환경복원사업 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, 시설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하여야 한다.
  - ③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.
  - ④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적정 유지여부 등을 연 2회이상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.
- 제45조의9(등록의 취소 등)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에

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- 1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
- 2. 영업정지기간 중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
- 3.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
- 4. 제45조의8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, 시설 등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- 5. 제45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
-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명령에 관한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- 제45조의10(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)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의 촉진과 그 질적 향상을 위하여 생태·환경적으로 우수하게 조성·관리되고 있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인증할 수있다.
  - ②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 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.
  -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면 그

-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
- 2.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기준,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 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- 제45조의11(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·운영)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율적 운영·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
  - ②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 - 1. 제45조의7에 따른 민·관 협의체 구성·운영, 자연환경복원사업 등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업, 사업추진실적 인정 등에 관한 사항
  - 2. 제45조의8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및 실적관리
  - 3. 제45조의10에 따른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에 관한 사항
  - 4.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관리
  - 5.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율적 운영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  - ③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  -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- 1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운영한 경우
- 2.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실적이 부실하여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
- 3.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 정하는 경우
- ⑤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·운영 및 취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0조제1항 본문 중 "자연환경보전사업의"를 "자연환경복원사업의"로, "자(이하 "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"라 한다)가"를 "자가"로, "자연환경보전사업을"을 "자연환경복원사업을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동의.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과 범위"를 "동의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45조의7(자연환경복원사업의
	민간참여 등) ① 훼손된 자연환
	경의 복원 등 생물다양성 증진
	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인, 단체,
	개인 등(이하 "민간"이라 한다)
	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자연
	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
	<u>다.</u>
	1. 자연환경복원사업에 필요한
	재산, 토지 등을 기부하는 방
	<u>식</u>
	2.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직접 실
	시하고 그 지역을 기부하는
	<u>방식</u>
	3. 민간이 보유한 재산의 무상
	대여 등 기타 환경부령으로
	정하는 방식
	② 환경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
	·군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
	민간 참여 방식의 자연환경복원
	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
	있도록 민·관 협의체 구성, 사
	업 컨설팅, 참여 실적 인정 등
	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

<u>다.</u>

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 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생물다양성 증진 을 위한 기여 활동 등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그 실적을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④ 환경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·군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의 재산, 토지 등을 기부 받은 경우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·관리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기부 및 사용·관리 절차 및 방 법, 자연환경복원 실적 인정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5조의8(자연환경복원사업 등 의 대행) ① 환경부장관 또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 등의 효과적 시행 및 생태·환경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한 자(이하 "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"라한다)에게 설계 및 시공 등을

<신 설>

<신 설>

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- ② 자연환경복원사업 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, 시설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등록을 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 다.
- ④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 사업 대행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적정 유지여부 등을 연 2회이상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.

제45조의9(등록의 취소 등)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

- 2. 영업정지기간 중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
- 3.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영 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
- 4. 제45조의8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, 시설 등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- 5. 제45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 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
-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 사업 대행자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명령에 관한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 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제45조의10(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)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의 촉진과 그 질적 향상을 위하여 생태·환경적으로 우수하게 조성·관리되고 있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우수 자연환경복원

<신 설>

사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.

- ②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 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 다.
-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
- 2.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경우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기준, 절차 및 취소 등에 필 요한 사항은 환경부렁으로 정한 다.

제45조의11(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·운영)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율적 운영·관리를 위하여 환경부 경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

<신 설>

다.

- ②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1. 제45조의7에 따른 민·관 협 의체 구성·운영, 자연환경복 원사업등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업, 사업추진실적 인정 등에 관한 사항
- 2. 제45조의8에 따른 자연환경

   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및 실

   적관리
- 3. 제45조의10에 따른 우수 자

   연환경복원사업 인증에 관한

   사항
- 4.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

   적 및 성과 관리
- 5.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율적 운영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환경복원지 원센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 다.

지50조(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
·지원)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계
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 또는
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
로부터 <u>자연환경보전사업의</u> 시
행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
에 관한 동의를 받은 <u>자(이하</u>
"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"라
한다)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
받아 대체자연의 조성, 생태계의 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는 <u>자연환경보전사업을</u> 시행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생태계보전
부담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
지정을 받거나 운영한 경우
2.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
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
실적이 부실하여 유지하는 것
이 부적절한 경우
3.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 지원
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
없다고 인정하는 경우
⑤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
정·운영 및 취소 등 필요한 사
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50조(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
•지원) ①
자연환경복원사업의
<u>자가</u>
<u>자연환경복원사업을</u>

1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

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. 다만, 산림 또는 산지에서 시행하는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 으로 인하여 부과된 생태계보전 부담금에 대하여는 반환금 또는 반환예정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산림 또 는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훼손 지 복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. ②제1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승인,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 한 자의 동의, 자연환경보전사 업 대행자의 자격과 범위, 생태 계보전부담금의 반환 ·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.

	•
2	
<u>동의</u>	